

'06. 5. 1(월)
제249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조례안 -

審 査 報 告 書

2006. 5. 1.
제249회 임시회

1. 심사 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6년 4월 14일

○ 회부일자 : 2006년 4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6. 4. 27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곽 연 창)

가. 제안 이유

-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를 위하여 국유림을 육림사업부지로 활용하였으나 국유림제도의 시행중단으로 더 이상 활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 분수국유림을 반환하면서 수익분배한 수익금으로 도유림과의 집산화 및 경제림 조성이 가능한 사유림을 매입, 공유임야를 확대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재산의 취득 : 공유임야 확대 조성 》

- 위 치 :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산46번지 등 8개 지역
- 재산규모 : 1,918,023㎡(191.8ha)
 -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산46 21.0ha
 -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산27-1 16.5ha
 -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산14-1 25.4ha
 - 괴산군 연풍면 분지리 산12 6.1ha
 -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산1 3.0ha
 - 괴산군 연풍면 갈산리 산38-1 38.6ha
 - 제천시 수산면 대전리 산27 48.5ha
 - 제천시 수산면 대전리 산28 11.9ha
 - 충주시 양성면 지당리 산7-1 20.8ha
- 사업기간 : 2006. 4 ~ 12(9개월)
- 사 업 비 : 2,079백만원(도비)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

-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에 필요한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산46번지 21ha 등 총 9필지 191.8ha를 구입하는 금번 도유림 매입의 건은 분수림제도에 분배수익금 20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예정으로, 기존 도유림과 연접되어 집단화가 가능한 임지내지 산림경영의 효율성 있는 면적이

큰 산림 등 도유재산으로서의 증식 가치가 있는 산림이 우선적인 매입대상임.

※ 분수림제도란?

- ▶ 국유림 조림시에는 산림청장과 분수림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조림, 육림 등 산림경영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목을 국가와 수익을 분배하는 제도.
- ▶ 수익금 분배는 평균 산림청 16%, 우리도 84% 정도임.

- 금번 임야 매입배경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익적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산림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무엇보다 산림청이 국유림 경영권 관리강화 차원에서 분수림제도를 2002년도에 폐지함에 따라 산림경영면적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어 감소된 만큼 대체산림을 구입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 검토결과, 도유림 재산 증식과 산림경영강화 등을 위한 본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현재 도유림 분포지역 및 면적 등 개략적인 현황과 함께 본 임야 매입건과 관련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임야소유주의 매도의사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현재 기존 도유림과의 집단화 정도, 경제림 조성계획(수종 등), 앞으로 활용계획과 재산가치적 기대효과 등의 보충적 설명이 필요함.
- 특히 그 동안 도유림 매입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소유주와 사전 매매협의를 하였더라도 실제 매입시에는 매매 협의당시와 매매 계약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어 주변여건변동 등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매입이 원만치 못하는 사례가 있으며, 최근 사유림 매입에 강한 의욕이 있는 산림청이 매입과정에 개입하여 가로채기식 매수도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415
----------	-----

제출연월일 : 2006년 4월 1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를 위하여 국유림을 육림사업부지로 활용하였으나 국유림제도의 시행중단으로 더 이상 활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 분수국유림을 반환하면서 수익분배한 수익금으로 도유림과의 집단화 및 경제림 조성이 가능한 사유림을 매입, 공유임야를 확대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 공유임야 확대 조성 》

- 위치 :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산46번지 등 8개 지역
- 재산규모 : 1,918,023m²(191.8ha)
 -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산46 21.0ha
 -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산27-1 16.5ha
 -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산14-1 25.4ha
 - 괴산군 연풍면 분지리 산12 6.1ha
 -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산1 3.0ha
 - 괴산군 연풍면 갈산리 산38-1 38.6ha
 - 제천시 수산면 대전리 산27 48.5ha
 - 제천시 수산면 대전리 산28 11.9ha
 - 충주시 양성면 지당리 산7-1 20.8ha
- 사업기간 : 2006. 4 ~ 12(9개월)
- 사업비 : 2,079백만원(도비)

3. 예산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재산취득	재산처분	출자취득	출자처분	비 고
계	2,079,000	-	-	-	
○ 공유임야 확대조성	2,079,000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서 : 별첨

5. 관계법령 : 별 첨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 200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 : m²)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1 건	1,918,023.00	2,079,000				
	건물							
	기타							
1	토지	8필지	1,918,023.00	2,079,000	2006	분수 국유림 수익 분배금 으로 공유임야 확대 조성	매 입 최 정 현 김 길 자 최 진 중 분지마을회 김 영 기 송 영 식 최 순 영 연 규 화 신 만 수	
		- 괴산 청안 부흥 산46	209,851.00	300,000				
		- 괴산 연풍 적석 산7-1	164,679.00	227,000				
		- 청원 미원 옥화 산4-1	254,678.00	194,000				
		- 괴산 연풍 분지 산12	60,198.00	59,000				
		- 제천 백운 운학 산1	30,545.00	22,000				
		- 괴산 연풍 갈금 산8-1	386,039.00	450,000				
		- 제천 수산 대전 산27	484,562.00	388,000				
		- 제천 수산 대전 산28	119,504.00	95,000				
	- 충주 양성 지당 산7-1	207,967.00	344,000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관 계 법 령 발 취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6항 제 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16조(공유재산심의회)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p> <p>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토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p>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①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13호서식) 2 ~ 5호 생략